

제3차 유엔 해양법(신해양법)과 대륙붕

박 용 안*

제3차 유엔 해양법 협약(UNCLOS)은 1994년 11월부터 발효되었고, 전세계 연안국(coastal states)은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을 비준하게 되었다. 우리 나라도 1996년 1월에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을 비준하였으며,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(EEZ)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신해양 질서의 의무와 권리의 궁정적으로 보안·창출하여야 한다.

특히, 제 3차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소위 “트루만 대륙붕 선언”(1945년) 이후 모호하였던 대륙붕해역과 해저의 경계 확정과 범위를 과학적인 요인과 법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혼합한 제 76조에 근거하여 200해리 이원의 더 깊고 넓은 해저와 해역으로 확장하며 outer limit를 확정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법적 권원(entitlement)을 명시하고 있다. 21세기에는 지구표면의 72% 바다표면이 연안국에 의하여 분할되고 소유되는 “해양분할시대”라고 말 할 수 있으며, 제4기학에서 공부하고 인정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사람과 환경의 연계성에서 대륙붕 바다의 삶의 터전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. 한·일 어업협정과 독도, 한·중 어업협정과 횡해 또는 남해 대륙붕과 제 7광구 등 우리의 삶과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의 바다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현안이며 2008년을 전후하여 어업협정문제보다도 더 뜨거운 감자로서 이슈화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* 유엔 대륙붕 위원회 위원
서울대학교 명예 교수
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
연근해역·대륙붕 연구센터 소장